장애학생지원규정 5-2-6

규정번호 5-2-6
제정일자 2008.12.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참석 및 진로 상담 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

제3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21.10.25)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10.25.)

1. <호 삭제(2021.10.25.)>
2. <호 삭제(2021.10.25.)>
3. <호 삭제(2021.10.25.)>
4. <호 삭제(2021.10.25.)>
5. <호 삭제(2021.10.25.)>

③ 센터는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0.25.)

제5조(편의제공 등) ①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 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6조(수강신청) 장애학생 유형별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학술정보원(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학술정보원(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개정 2018.08.27)

1.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 대출기간의 연장적용

4. 기타 장애학생의 학술정보원(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편의 지원 등(개정 2018.08.27)

제9조(장애학생 상담) ①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 학습보조 도우미

2. 이동보조 도우미

3. 학술정보원(도서관)이용 도우미(개정 2018.08.27)

② 도우미에게는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의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7.24.)

제11조(교육 기자재 보유) 제5조 제1호에 의거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시설) 제5조 제5호에 의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장애학생 전용 검색대(PC)

4.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기획실장, 교

무처장, 사무처장, 장애학생 소속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03., 2018.08.27., 2021.10.25)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24.)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10.25.)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 삭제(2021.10.25.)>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73> <생략>

<74>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9조②, 제10조③, 제13조②, 제1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5>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9> <생략>

<40>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하고, 제17조 ①항의 “학생과장”을 각각 “학생팀장”으로 한다.

<41> - <49>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22> <생략>

<23>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의 “학생팀”을 “학생복지팀”으로 하고, 13조 ②항의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며, 17조 ①항의 “학생팀장”을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24>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